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7
----------	-----

제출연월일 : 2012.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중구청장

1. 개정이유

6·25참전유공자에게만 지원하였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남전쟁참전유공자에게도 지원 하여, 참전유공자의 형평성 유지 및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화합을 도모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울산광역시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로 변경

나. “6·25참전 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범위 확대(안 제1조부터 제6조 까지)

다. 지원대상자를 “울산광역시 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을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로 변경(안 제3조)

라. 지원제외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는 자 삭제(안 제3조제2호)

마.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안 제4조제1호)

바.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에서 20만원 인상(안 제4조제2호)

사. 2013년 1월 1일 시행

3. 근거법규

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4.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평가실시

다. 관련부서 승인(협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사항 :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2. 9. 11 부터 2012. 10. 2까지 구 공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음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6·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에 따라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를”로 한다.

제2조 본문, 제3조제1호, 제4조 본문,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중 “6·25참전유공자”를 각각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2조제1호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을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면역된 군인”으로 하고, 같은조 제3호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로 한다.

제3조 “6·25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호 중 “월 2만원”을 “월 3만원”로 하며, 같은조 제2호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인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6·25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2. (생략) 3.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장관이 인정한 자 4. (생략)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25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p>	<p>울산광역시중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 _____ _____ _____ 제2조(용어의 정의) _____ -- "참전유공자" _____ _____ 1.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면역된 군인 2. (현재와 같음) 3.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_____ _____ 4. (현재와 같음) 제3조(지원대상)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로서 지급일 기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_____ _____</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6·25참전유공자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는 자 제4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6·25참전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6·25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지급 2. 6·25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3. 그 밖에 6·25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이하 "참전명예수당"이라 한다) 신청자 중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p>	<p>1. 참전유공자 _____ _____ _____ <삭 제> 제4조(지원사업) _____ _____참전유공자 _____ 1. 참전유공자 _____ 월 3만원 _____ 2. 참전유공자 _____ 20만원 _____ 3. _____ 참전유공자 _____ _____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_____ 참전유공자 _____ _____ _____</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u>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인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u>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참전명예수당을 매 분기 말 다음 달 25일까지 <u>6·25참전유공자</u>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p> <p>② <u>6·25참전유공자</u>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법정상속인은 <u>별지 제2호서식인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6·25참전 유공자의 사망일</u>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u>호적등본</u>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 <u>별지 제1호 서식</u> <u>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u> -- ----- ----- -- <u>참전유공자</u> ----- -----.</p> <p>② <u>참전유공자</u> ----- ----- -----<u>별지 제2호서식</u> <u>참전유공자</u> <u>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u>-- <u>참전유공자</u> ----- ----- ----- ----- -- <u>가족관계증명서</u> -- -----.</p> <p>③ (현재와 같음)</p> <p>④ (현재와 같음)</p>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47)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11. 12.(월)
-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회부 : 2012. 11. 13.(화)
- 위원회심사 : 2012. 11. 30.(금)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복지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6·25참전유공자에게만 지원하였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남전쟁참전 유공자에게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형평성 유지 및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제명 「울산광역시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로 변경
- “6·25참전 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범위 확대(안 제1조 ~ 제6조)
- 지원대상자를 “울산광역시 중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을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로 변경 (안 제3조)
- 지원제외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 받는 자 삭제(안 제3조제2호)
-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안 제4조제1호)
-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에서 20만원 인상(안 제4조제2호)
- 2013년 1월 1일 시행

4. 근거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5.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진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6·25참전유공자에 한해 지급해오던 것을 월남전쟁참전유공자로 확대하고,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여 참전에 대한 예우와 구·군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개정사항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